

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02. 15.

제출자 : 김영해의원의외 6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의 지원을 위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지난 2004년 12월 30일 대한올림픽위원회(KOC)의 국내후보도시 평창 확정에 따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군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활 동 제 획

1. 활 동 목 적

-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역량결집 및 전 국민적 유치열기 확산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
- 군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및 의회를 망라한 총체적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실현시키고자 함.

2. 구 성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3
-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

3. 활 동 기 간

- 특위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중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
우강호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-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요안건 채택
-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적극 참여 및 지원
-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유치 홍보활동 전개
 - 각종 행사를 통한 유치 다짐대회 개최
 - 국내 개최 주요행사·대회계기 홍보